

한국어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대안 표현 성격 검토

김소영(광운대학교)

1. 들어가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언어와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가 늘 같지는 않으며,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언어의 어떤 부분은 오늘날에 맞지 않는 때도 있다. 이처럼 사회 속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된다. 언어의 측면에서도 차별적인 언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사회 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차별 언어 중에서도 성차별어에 대한 검토는 비교적 일찍 시작된 편이나, 차별 언어의 개선은 여전히 한창 진행 중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기존에 성차별어의 대안 표현으로 제시된 언어 표현들을 검토하고 이들 표현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성차별어와 그 대안어가 가지는 의미 관계를 파악하고 대안어가 갖추어야 할 언어적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더 나은 대안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성차별 언어 표현의 성격과 유형

차별적 언어 표현은 '한 사회의 소수자 또는 약자들에 대한 차별적 의도 또는 인식을 드러내는 특정 단어, 구, 문장으로 이루어진 표현'을 일컫는다.(국립국어원 2006).¹⁾ 차별적 언어 표현은 사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많은데, 한국어에서는 성, 장애, 지역, 인종, 국적, 직업 등의 범주에서 차별적인 언어 표현을 발견하게 된다.

성차별 언어의 차원에서 소수자, 약자의 위치를 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성이므로, 성차별 언어를 검토할 때에는 그 언어가 어떠한 부분들에서 여성 차별적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2006)에서부터는 성차별 언어 표현의 범주에 여성 차별 표현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차별적 표현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²⁾ 성차별 언어 표현의 분류 기준이 정교화된다(조태린 2011:389-395). 물론 대부분의 성차별적 언어는 여성차별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사실이나, 성차별적 언어가 언제나 여성 차별어와 동의어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성차별적 언어란 성별의 관점에서 특정 성에 대한 차별이나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언어 표현을 뜻한다고 하겠다.

1) 차별 표현은 '혐오 표현'과 함께 언급되는 일이 많다. '혐오 표현'은 서구의 'Hate Speech'와 유사한 개념으로, 차별 표현보다는 직접적인 비하와 혐오의 의미를 담고 있다(예: 맘충, 된장녀). 이 둘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차별 표현이 혐오 표현의 상위 개념으로 파악되기도 한다(이정복 2017:10-11). 본고의 차별 표현은 넓은 의미에서 혐오 표현을 포함하는 것이나, 혐오 표현의 대안어가 제안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혐오 표현을 제외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2) 일례로 이 연구에서 제시된 성차별적 언어 유형의 기준 중에 '한 성을 지칭하는 단어로 남녀를 모두 포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의 하위 유형으로 '남성형으로 여성까지 대표하는 단어(예: 형제, 건국의 아버지)'와 '여성형으로 남성까지 대표하는 단어(예: 자매 결연)'를 모두 설정하고 있다.

성차별 언어 표현은 몇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분석 관점에 따라 언어 표현의 성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국립국어원(2006:29-35)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1) 성차별 언어 표현의 분류

가.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명칭: 미혼모, 미망인 등

나. 여성임을 특별히 드러냄: 여성 예술가, 여대생, 여교수 등

다. 여성의 성적, 신체적 측면을 이용: 처녀작, 처녀 출전 등

라.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 ①시집가다, 바깥어른, 집사람 / ②부부, 부모, 남매 / ③손자, 형제, 학부형 등

마. 여성을 비하: 여편네, 마누라, 기집애 등

(1가)의 '미혼모'와³⁾ '미망인'은⁴⁾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명칭이며 남성에게는 이에 해당하는 명칭이 없다. 특히 이러한 표현들은 때로는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차별적인 성격을 띤다. (1나)는 여성에게만 '여, 여성, 여류'와 같은 표현을 덧붙이는 유형이다. 남자 대학생이나 남성 교수를 '남대생, 남교수'라고 부르는 일이 드문 것과 대조된다. 특히 남성이 독점하고 있던 직업이나 직위에서 이러한 일이 잦다. (1다)에서 '처녀'의 기본 의미는 '결혼하지 않은 성년 여자'이나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는 의미가 파생되어 '처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인데, 이는 여성만의 성적 순결을 강조하는 사회 구조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1라)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된 유형이다. 고정관념은 사회 구조의 모습이 투영되기 마련이므로, 언어 반영된 고정관념은 차별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여성이 남성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전통적 성가치관이 반영된 '시집가다'와 같은 표현이라든가, 남성이 집 밖에서 활동하고 여성은 집 안에서 활동한다는 전통적인 관점이 반영된 '바깥어른, 집사람'과 같은 표현도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 '부부, 부모'와 같이 표현 내에서 남성이 앞서는 경우나, '손자, 형제'와 같이 남성을 대표형으로 삼아 남성과 여성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 역시 전통적인 성 관념에 기반한 것이다. (1마)는 여성을 낮추어 표현하는 것이다.

3. 성차별 언어 표현의 대안어와 그 특징

차별 언어에 대한 분석은 차별 언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립국어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에서는 성평등한 언어 사용을 위하여 '성차별적 언어 사용 관행의 개선', '대체 및 새로운 언어 표현의 개발', '제도 및 정책의 개선'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이 중 두 번째 '대체 및 새로운 언어 표현의 개발'은 '성 중립적이고 성평등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대안적 언어 표현을 개발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을 취하는 방식'이다(조태린 2011:401).

3)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여성'을 뜻하는 '미혼모'는 이것의 남성 표현 쪽인 '미혼부'가 있으므로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명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혼모'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임에 비해 '미혼부'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라 '미혼모'가 (1가)로 분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미망인(未亡人)'의 축자적인 의미는 '아직 죽지 못한 사람'으로, 기원적으로는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었던 중국의 순장제도를 배경으로 하여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이해하는 가부장제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신지영 2018:155)

이 장에서는 기존의 정부 기관의 보고서 등에서 제시한⁵⁾ 성차별 언어 중 그 대안 표현이 함께 제시된 것들을 살펴보고, 이들 대안 표현의 특성과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고의 분석 대상 자료는 아래의 (2)로, 이 중 (A), (B)는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 미디어 보도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되고 있는 차별 표현들을 수집, 분석한 자료들이다. (C)~(F)는 모두 서울시에서 제안한 것으로, (C), (D)는 '행정용어 순화어'로 선정된 것 중 성차별어 관련 항목만을 대상으로 하였다.⁶⁾ (E)~(G)는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차별어와 대안어를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선정한 것이다. (H)에서는 국민들이 가정, 사회 등의 의사소통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호칭·지칭어, 경어법 등의 개선안이 제안되었는데, 이 중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 여성과 관련된 친족 호칭어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2) 대안어 분석 자료

- (A) 국립국어원(2006),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 (B) 국립국어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 (C) 2018년 서울시행정용어순화어
- (D) 2019년 서울시행정용어순화어
- (E)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8),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꾼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 사전>
- (F)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9),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꾼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시즌2'>
- (G)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0), <서울시 성평등 명절사전>
- (H) 국립국어원(2019),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⁷⁾

(2)의 대상 자료는 정부 기관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일반 국민은 물론 시민 단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온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안어들이 단지 정부 기관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⁸⁾ 또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일반 국민, 개인 연구자, 시민 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시한 것들이 (2)의 대안어들과 겹치는 것도 많다.

이상의 (2)에서 제시된 성차별어와 그 대안 표현은 (1)의 성차별어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해 봤을 때 아래의 (3)과 같이 차별어를 기준으로 하여 53항목 정도를 추려낼 수 있다.

5) 이들은 정부 기관에서 간행된 것이기는 하나 강제성이 있거나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권고, 제안하는 성격에 띤다. 다만 정부 기관에서 나온 것이기에 이러한 내용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언론에 홍보되므로, 국민들에게 일정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6) 어렵고 권위적인 용어, 외래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제안되어 온 것으로, 여성 차별어 외에도 '정상인→비장애인, 가이드북→안내서, 상신(上申)→올림, 보고'와 같이 다양한 성격의 행정 용어 순화어들이 제시되어 있다.
 7) 국립국어원(2017), 국립국어원(2018)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8) 예를 들어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와 같은 친족 호칭어에 대한 문제 제기는 2007년에 한국여성민우회의 <호락호락 캠페인>과 같은 시민단체 활동에서 이미 있었다. 또 전국 17개 시도의 10~60대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결혼한 여성이 남성의 동생을 부를 때에는 '도련님, 아가씨' 등으로 높여 부르고, 결혼한 남성이 아내의 동생을 부를 때에는 '처남, 처제' 등으로 높이지 않고 부르는 관행에 대해 고쳐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온 것을 보아도(65.8%)(국립국어원 2017:126), 이러한 가족 호칭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소수의 견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부 기관의 대안어 제시는 이러한 흐름의 연속선 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3)⁹⁾

분류항목	차별어	대안어	출처	분류항목	차별어	대안어	출처
가.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명칭	미혼모	비혼모	D	라①-1.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친족용어)	서방님, 도련님, 아가씨	이름+씨, 님 OO 삼촌(고모), 이름 부르기, 동생님 등	G H
	미망인	고인인 ~의 부인	A		친할머니, 외할머니	'할머니'로 통일	H,G
		고 OO(씨)의 부인	B,D		친가	아버지 본가	G
	안내양	안내원	A		외가	어머니 본가	G
	영부인	대통령의 부인 ¹⁰⁾	B		시댁 ¹¹⁾	시가	G
	레이싱걸	레이싱 모델, 경주 도우미	B				
가-1	OO녀, OO남 ¹²⁾	OO인	B	라③.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남성 대표형)	학부형 ¹³⁾	학부모	A,B,C
나. 여성 입을 특별히 드러냄	여OO	OO	A,E	라④-1.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남성 대표형)	스포츠맨십	스포츠정신	F
	여자고등학교	고등학교	E		자궁(子宮) ¹⁴⁾	포궁(胞宮)	E
다. 여성의 신체적 측면을 이용	처녀 OO	첫 OO	A,B,E	라⑤-1.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남성 혹은 여성 대상 표현 사용)	효자상품	인기상품	F
	버진로드 (Virgin Road)	꽃길	D		효자상품	알짜상품	D
		웨딩로드	F		분자(分子), 분모(分母)	윗수, 아랫수	F
라①.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전통적 성가치관)	시집가다	결혼하다	A	신사협정	명예협정	B	
	집사람	아내	A	아버지	대가 ¹⁵⁾	B	
	집사람, 안사람, 아내, 바깥양반	배우자	B,G	아들말마담, 바지사장	대리사장, 명의사장	B	
	내조/외조	(배우자의) 도움	C	사모님식 투자	주먹구구식 투자	B	
	녹색 어머니	녹색 학부모회	C	매춘부, 윤락녀	성매매 여성	B	
				양공주	기치촌 성매매 여성	B	

9) (3)의 언어 표현들은 개별적인 성격이 다른 것은 물론 각 표현이 얼마나 차별적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역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안내양, 양공주'와 같은 단어는 이미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된 단어이며, '마미깁, 맘스스테이션'은 비교적 신어에 가깝다. 따라서 이들 차별 표현에 대한 대안 표현에 대한 수용도 역시 같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각 차별 표현을 선정한 시기, 관점, 목적 등이 자료별로 달랐기 때문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움'이라는 더 상위 개념에 속하는 제3의 단어로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면 성별 개념을 중성화 하게 된다.²⁴⁾

(4나)의 중립화는 차별어와 대안어 양쪽에 성별의 개념은 유지하되, 그 외의 의미들에 담긴 차별성을 제거하여 중립적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예컨대 '부녀자'를 '여성'이라고 수정하면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개념들을 없앨 수 있다. (4다)의 대칭화는 원 표현이 여성과 남성 한쪽만을 표현할 수 있거나, 혹은 원 표현이 남성과 여성 양쪽에 비대칭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대칭적으로 만드는 것이다.²⁵⁾ 예를 들어 '영부인'은 여성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대통령의 부인'과 같이 풀어 사용하면 대통령이 여성인 경우 '대통령의 남편'과 같이 남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대칭화할 수 있다.

(4라)는 원 표현과 대안어가 언어적인 차원에서 성차별적이지는 않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미혼'을 '비혼'으로 순화하면 혼인제도 중심적인 사고를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비혼모'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여지가 있으나, '미혼' 자체가 언어적인 측면에서 성차별적인 속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리벤지 포르노'가 '디지털 성범죄'라는 표현으로 바뀔으로써 사람들의 의식이 재고되면 결과적으로 성범죄의 피해에 더 쉽게 노출되는 여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언어상에 드러나는 차별을 해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성차별어와 대안어의 관계는 결국 언어의 개선이 언어 그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사회의 구조와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 준다고 할 수 있다.

4. 나오며

차별적 언어 표현 개선 문제는 언어학의 그 어떤 분야보다도 사회적인 요구와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언어가 우리의 정신을 담은 그릇임에도 어떠한 그릇은 오늘날의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지 못하는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자 그 자체로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늘 변화하고 있음에도 동시에 갑자기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속성이 아니다. 어떤 언어가 차별적인지 차별적이지 않은지, 또 차별적이라고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여러 이견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차별어에 대한 대안 표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중들에게 항상 잘 수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어떤 대안 표현이 바람직한지는 단지 언어학적인 분석의 결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심리학적 차원이나 사회 정서 등 언어 외적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변화와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며, 언어학적 차원에서도 더

24) 다만 이 경우 제3의 단어로 만들어진 단어가 원 단어들을 무리없이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거녀, 동거남'을 '동거인'이라고 수정하였을 때에, '동거인'이 이성 관계 외의 함께 거주하는 사람까지도 포괄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안어로서 아주 적합한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25) 특히 이러한 대칭화 작업은 가족 호칭어, 지칭어의 대안 표현을 모색하는 작업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국립국어원(2018:26)에서는 가족 관계 내, 사회 관계 내의 호칭어, 지칭어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개정 기준 중 '남녀간 대칭적 호칭어, 지칭어 체계를 갖춘다'는 조건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남편의 지칭 표현인 '바깥사람'이 성차별적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파악하여 이에 대칭적인 아내의 지칭 표현 '집사람, 안사람'도 함께 삭제되었다. 모든 언어 표현이 반드시 여성과 남성의 짝을 이루어 대칭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호칭어와 지칭어가 특히 남성이 사용하는 표현에 비해 여성이 사용하는 표현이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것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바람직한 대안어를 발굴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신지영(2018), <언어의 줄다리기>, 21세기북스.
 이정복(2013), <한국 사회의 차별 언어>, 소동.
 이정복(2017), 한국어와 한국 사회의 차별 표현, <새국어생활> 27-3, 국립국어원, 9-31.
 조태린(2011), 차별적 언어 표현과 사회 갈등의 문제, <나라사랑> 120, 외솔회, 388-410.

2. 보고서
 국립국어원(2006),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연구 책임자: 조태린)
 국립국어원(2011), <표준 언어 예절>.
 국립국어원(2017),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연구 책임자: 나윤정)
 국립국어원(2018),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 연구-언어 예절을 중심으로>(연구 책임자: 박철우)
 국립국어원(2019),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국립국어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연구 책임자: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일상 속 성차별 언어 표현 현황 연구>(연구 책임자: 이수연)
 여성가족부(2006), <성평등한 미디어 언어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및 연구>(연구 책임자: 이수연)

3. 인터넷 자료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8),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꾼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 사전>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9),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꾼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_시즌2> (http://www.seoulwomen.or.kr/c3/sub3_1_view.jsp?regNo=1561609074492)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0) <서울시 성평등 명절사전> (http://www.seoulwomen.or.kr/c3/sub3_1_view.jsp?regNo=1579755582937)
 (http://www.seoulwomen.or.kr/c3/sub3_1_view.jsp?regNo=1530250458660)
 서울시 행정순화어(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3764?tr_code=sweb)